# 빅데이터를 활용한 월간 워드 클라우드 및 주요 상담사례(22년 6월)

2022. 6 / 저작권상담팀(☎ 1800-5455)




(단어의 크기가 클수록 월간 질의가 많이 온 것을 의미함)

- (월간 워드 클라우드)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상담센터에서 한 달 동안 상담한 내용 중 가장 많이 이용된 저작권 관련 핵심 단어 100개를 빅데이터 기법을 통해 추출하여 시각적으로 이미지화

- (월간 주요 상담사례) 월간 워드 클라우드 중 1위부터 5위까지의 저작권 관련 핵심 단어(저작물 종류별 및 기타 핵심단어 각 5개, 총 10개)와 관련한 저작권 상담사례를 요약 정리

| 순위 | 저작물 종류별 | 기타 |
|---|---|---|
| 1 | 영상 | 이용 |
| 2 | 사진 | 등록 |
| 3 | 폰트 | 제작 |
| 4 | 캐릭터 | 침해 |
| 5 | 영화 | 유튜브 |

※ 공유마당(https://gongu.copyright.or.kr/)의 대구광역시 달서구 '달서힐링체B' 글꼴로 작성

## < 저작물 종류별 주요 상담 >

**○ (영상) 불법 행위를 하는 자극적인 영상을 제작하는 유튜버가 있다. 해당 유튜버의 영상을 증거로 경찰서에 고발하고자 하는데 영상을 복제하여 제출하면 저작권법상 문제가 되는가?**

-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저작권자의 허락을 얻는 것이 원칙이나[1], 저작물의 통상적인 이용 방법과 충돌하지 아니하고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해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저작재산권이 제한되어 저작권법상 허용될 수 있다.[2]

**○ (사진) 유료로 판매되는 사진을 구매한 후 이를 인터넷 게시판에 공유하여 권리자로부터 연락을 받았다. 저작권자 측에서 요구하는 합의금이 너무 많은데 위원회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가?**

- 합의의 의사가 있으나 분쟁의 당사자 간에 원만한 합의가 어렵다면 위원회의 조정제도를 통해 저작권 전문가들로 구성된 조정부의 도움을 받아 신속하고 경제적으로 저작권분쟁을 해결할 수도 있다. 다만, 조정은 상대방이 응하지 않거나 합의가 성립되지 않는다면 불성립으로 종결될 수도 있다.

**○ (폰트) 포장지를 구매하여 제품 포장에 이용 중인데, 폰트 이용에 대한 내용증명을 받았다. 제품 포장지를 이용한 측도 저작권 침해로 문제가 되는 것인가?**

- 폰트 파일은 컴퓨터프로그램으로서 보호될 수 있으나,[3] 폰트 도안 자체는 저작물로서 보호받지 못한다.[4] 포장지를 구매하여 이용하였다면 폰트 도안만 이용한 것이므로 저작권법상 문제가 되지 않는다.

**○ (캐릭터) 웹툰을 제작 중인데, 등장인물의 이름이 유명한 만화의 캐릭터 이름과 같다면 저작권법상 문제가 되는가?**

- 이름이나 단어, 제호 등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의 표명이라고 보기 어려워 저작물

---

1) 저작권법 제46조.
2) 저작권법 제35조의5.
3) 대법원 2001. 6. 29 선고 99다23246 판결.
4) 서울고등법원 1994. 4. 6 선고 93구25075 판결.

로서의 보호는 인정하기 어렵다.[5] 따라서 등장인물의 이름은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

○ **(영화) 영화를 관람 후 엔딩 크레딧을 배경으로 인증샷을 촬영하였는데 저작권법상 문제가 되는 것인가?**

- 검은 배경에 제작자들의 이름만 나오는 장면은 저작물로 보기 어려울 수 있고, 아울러 이러한 인증샷은 부수적 복제[6]로서 허용될 여지도 있다. 다만, 영상저작물을 상영 중인 영화 상영관에서 녹화하는 행위는 저작권법상 문제가 되므로 영화를 녹화하였다는 오해를 받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7]

## < 기타 주요 상담 >

○ **(이용) 국회가 제공하는 국정감사 결과보고서를 이용하여 영상 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는가?**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상 작성하여 공표한 저작물이나 계약에 따라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보유한 저작물인 경우라면 예외[8]를 제외하고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하다. 따라서, 국회가 제작하여 제공하는 국정감사 결과보고서는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하다.

○ **(등록) 저작권등록을 하면 어떤 부분에서 도움이 되는가?**

- 저작권은 창작과 동시에 발생하며, 권리발생 어떠한 절차나 형식의 이행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따라서 자신이 창작하고 공표한 사실 등을 입증할 수 있다면 등록을 하지 않았더라도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

---

5) 대법원 1977.7.12. 선고 77다90판결.
6) 저작권법 제35조의3.
7) 저작권법 제104조의6.
8) 저작권법 제24조의2 제1항
1.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정보를 포함하는 경우
2. 개인의 사생활 또는 사업상 비밀에 해당하는 경우
3. 다른 법률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는 정보를 포함하는 경우
4. 제112조에 따른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된 저작물로서 「국유재산법」에 따른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 공유재산으로 관리되는 경우

- 등록을 하는 경우, 실명으로 등록된 자를 저작자로 추정하며 등록시 기재한 창작연월일과 공표연월일에 대한 추정력도 발생하므로 권리 보호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창작일로부터 1년 후 등록하면 창작연월일에 대한 추정력은 발생하지 않는다.

**○ (제작) 시중에 번역된 성경책의 내용을 다듬고 새롭게 번역하고자 한다. 성경은 보호기간이 만료된 것으로 아는데 문제가 없는가?**

- 성경의 원본은 저작권법의 보호기간이 만료되어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하나, 번역본은 별개의 저작물로서 보호받는다. 따라서 다른 사람의 번역본을 이용한다면 번역의 저작권자에게 허락을 받아야 한다.

**○ (침해) 유명하거나 독특한 외형의 건축물을 그림으로 그려 판매하면 저작권법상 문제가 되는가?**

- 미술저작물 등이 가로·공원·건축물의 외벽 그 밖에 공중에게 개방된 장소에 항시 전시되어 경우 이를 복제하여 이용할 수 있으나, 판매의 목적으로 복제하는 것은 제한된다.[9] 따라서 건축물을 그려 판매하기 위해서는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 (유튜브) 30년 전 종영한 TV 드라마 전편을 녹화하였는데 이를 유튜브에 올리면 문제가 되는가?**

- 영상저작물은 공표 후 70년 동안 보호된다.[10] 따라서 드라마가 종영하였더라도 보호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경우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인터넷상에 올린다면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

※ 공유마당(https://gongu.copyright.or.kr/)의 칠곡군 '칠곡할매 이종희체' 글꼴로 작성

---

9) 저작권법 제35조 제2항
1. 건축물을 건축물로 복제하는 경우
2. 조각 또는 회화를 조각 또는 회화로 복제하는 경우
3. 제항 단서의 규정에 따른 개방된 장소 등에 항시 전시하기 위하여 복제하는 경우
4. 판매의 목적으로 복제하는 경우

10) 저작권법 제42조




한국저작권위원회가 창작한 빅데이터를 활용한 월간 워드 클라우드 및 주요 상담 사례(22년 6월)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